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

전병욱*

〈요약〉

정부의 2022.11.4.자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조세지원 경로 및 조세혜택 금액의 외견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출자·출연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출자·출연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현행 조세지원의 대상인 출자·출연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투자 증가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이를 통한 조세혜택 확대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분석해서 제시했는데,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현행 조세법령 및 정부의 개편방안 등에 대한 엄밀한 문헌분석과 함께 세부적 분석에 필요한 수리 논리학적 개념 체계를 적용하였다.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및 개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과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조세정책의 수단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공제율을 인상하되,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손실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으로 계산해서 모험적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누적효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행 조세지원에서 개별 투자자의 출자·투자액의 한도를 규정해서 비정상적 투자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개별 조세지원별 투자대상을 일원화해서 시장의 혼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벤처 세제지원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구축효과, 절세효과, 결손금, 누적효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I. 서 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10.27.자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2022.11.4.자 보도자료(“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서 해당 조성방안의 핵심전략으로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세계(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및 “선진적인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함께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민간 벤처모펀드¹⁾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해당 조성방안은 민간 벤처모펀드(이하 “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개인 출자자·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모펀드”는 정책금융의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이하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의 제공을 구체화해서 기획재정부는 2022.11.4.자 보도자료(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이하 “기획재정부 자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와 통칭할 경우에는 “정부 자료”)에서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이하 “벤처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모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해서 개인과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법령의 개정²⁾에 따른 출자, 운용 및 회수 단계의 개별적인 조세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해당 조성방안의 정책적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분석해서 제시하도록 한다.

즉,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공헌하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지원의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이 벤처투자의 다양한 거래 단계에서 조세부담을 충분히 경감시켜서 당초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방안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한 비판적

1) 원래의 표현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인데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또는 본문과 같이 “모펀드”)로 기재하였다. 이하의 내용에서도 원래의 표현이 “...기금(펀드)”인 단어는 “...펀드”로 기재했다.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의 제시도 필요한 것이다. 벤처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이러한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조세정책의 개선에 공헌하는 것이 본 연구의 수행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및 개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과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조세정책의 수단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공제율을 인상하되,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손실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으로 계산해서 모험적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누적효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밖의 현행 조세지원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개별 투자자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하여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비정상적 투자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이 소득공제와 상이한 것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장의 혼돈을 제거하기 위해 양자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세부적 보완을 통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미시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역동적 벤처투자의 생태계의 조성과 관련한 장래의 정책적 논의에서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I.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분석 및 비판적 평가

1.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관

기획재정부의 2022.11.4.자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모펀드의 벤처투자 관련 출자·운용·회수의 단계별로 현행 조세지원을 아래와 같이 개별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내용이다.

가.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조의2는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의 “창투조합등”(정부 자료에서는 “자펀드”)을²⁾ 통해 (이하 각각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벤처기업 등의 “창업기업 등”에³⁾ 투자한 경우에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편의상 “유형①”).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는 벤처투자시장의 저변 확대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가 ① 창투조합등(“자펀드”)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및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출자·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⁴⁾, ③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⁵⁾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3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⁶⁾ 규정하였다(이하 편의상 “유형②”).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적격펀드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13조는 “기관투자자의 지속적인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금운용법인(이하 편의상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 등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⁷⁾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자펀드”)을 통해(“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창업기업 등의 주식·지분 양도를 통한 처분이익(이하 “주식양도차익”)과 함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 중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동시에 지칭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적격펀드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이하 편의상 “유형③”).

-
- 2) “창투조합등”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또는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
 - 3) “창업기업 등”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이다.
 - 4)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종합소득공제의 항목에 포함한다.
 - 5) “벤처기업등”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다.
 - 6)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0% 및 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
 -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다.

(4)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벤처투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자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규정하였다⁸⁾(이하 “유형④”). 여기서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하고(벤처투자법 제2조 제8호), “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동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벤처투자법 제2조 제11호).

나. 정부 자료의 벤처 세제지원방안

(1) 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내국법인의 자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MAX(모펀드 출자금액의 60%, 투자금액)(이하 “당기분”)의 5%와 함께 (당해연도 투자금액－직전 3년의 평균 투자금액)(이하 “증가분”)의 3%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이와 별도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⁹⁾ 통해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 기금에 대한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고 제시하였다.

(2) 개인의 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개인이 자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고 제시하였다.

(3) 모펀드·자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개인과 함께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가 자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이 모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자본시장법상 적격펀드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별개로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벤처

8) 벤처투자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동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포함한다.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1항은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했고, 동조 제3항은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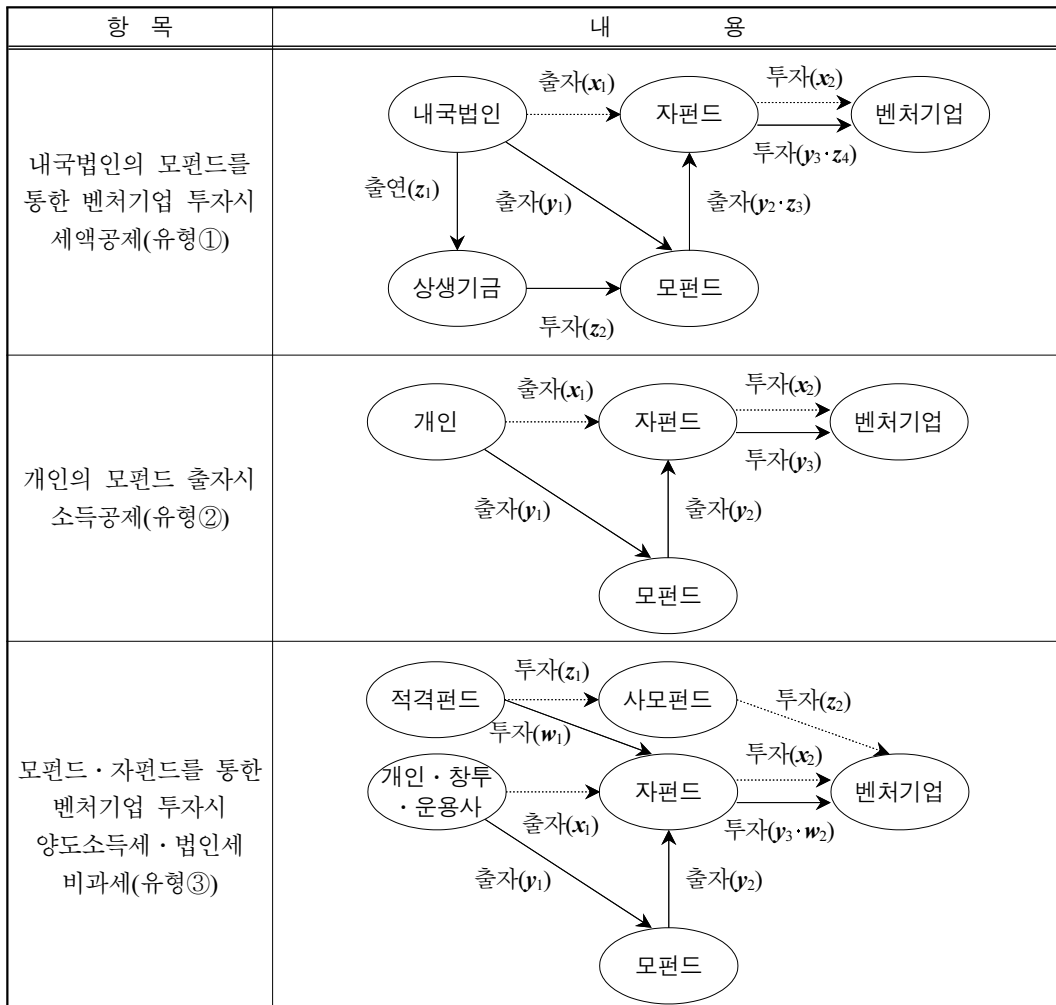
투자조합(“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고 제시하였다.

(4)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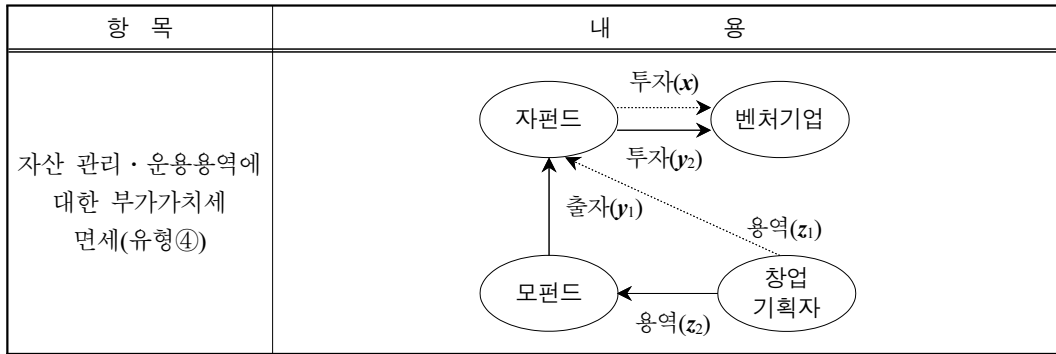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창업기획자가 자펀드에 공급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과 별개로 모펀드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과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과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



〈그림 1〉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과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 (계속)



* 점선은 현행 조세지원이고, 실선은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조세지원임.

벤처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한 이상의 개관과 관련해서 이후의 내용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약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벤처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한 주요 약어

약어	내 용
모펀드	정책금융의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
자펀드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의 벤처펀드
유형①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의 창투조합등(자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의 창업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유형②	거주자가 ① 창투조합등(자펀드)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및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출자·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③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3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유형③	①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 등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자펀드)을 통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창업기업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함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 중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모펀드·자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유형④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자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규정(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벤처 생태계는 투자자, 전문 출자자 및 전문 조합의 다양한 구성에 의한 투자방식에 따라 최종적인 투자대상에 생산적인 산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필요한 있는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는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생산·고용의 유발과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벤처투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들 벤처 생태계의 참가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벤처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다. 즉,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생산·고용의 유발과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기본적 성과와 함께 혁신적 기술의 발전 및 대기업과 신생기업 간의 동반성장 강화에 의한 경제적 활력의 제고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 발생에 대하여 비용부담자인 벤처·창업 생태계 참가자들을 대신 일반 국민이 효익을 얻는 것은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직·간접적인 벤처투자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벤처투자에 대한 주요 국가의 조세지원방안

(1) 미국

미국은 벤처기업의 법인 및 개인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데, 먼저, 법인 투자자 중에서 일반 법인에게서는 적격기업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투자조합 등에는 도관 이론에 따라 취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격소기업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의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이연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연방정부와 구분해서 29개의 주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데, 먼저 법인투자자 중에서 일반 법인에게서는 적격기업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투자조합 등에는 도관 이론에 따라 취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주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이연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 적격기업의 기준은 주별로 상이하다.

(3) 영국

영국의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기업가투자지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초기기업 투자지원제도(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벤처캐피털트러스트(Venture Capital Trust, VCT) 및 사회적기업 투자지원제도(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SR)가 있는데, 이들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여기서 과세특례의 신청이 가능한 개인별 투자금의 연간 한도와 더불어 개별 기업이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달가능한 최대금액의 한도가 존재한다. 즉, 개별 기업이 일생 동안 조달할 수 있는 최대금액 중 SEIS 투자는 150만파운드, SISR 투자는 150만파운드, EIS 및 VCT 투자는 1,200만파운드인데, 예외적으로 회사가 일정한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수행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 2> 영국의 벤처지원제도

구분	투자대상기업
EIS	투자시점에 총자산 1,500만 파운드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 상업적 판매 개시 후 7년 이내인 비상장기업 ^{*1}
SEIS	과거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으로 투자시점에 총자산 20만 파운드 이하, 종업원 25명 이내인 기업 ^{*2}
SISR	총자산 1,500만 파운드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의 사회적기업 ^{*3}
VCT	상업적 판매 개시 후 7년 이내인 총자산 1,500만 이하, 종업원 250명 이내인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벤처캐피털신탁 ^{*4}

*¹ 연구개발이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² EIS 또는 VCT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은 SEIS를 적용할 수 없음.

*³ 사회적기업은 등록된 자선단체,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iy interest company) 또는 공동체이익 증진 조합(communitiy benefit society)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⁴ 벤처캐피털신탁은 영국 국세청의 승인 하에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로서 연구 개발 또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4) 일본

일본은 법인 및 개인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데, 먼저 법인 투자자 중에서 일반 법인에게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투자조합 등에는 도관 이론에 따라 취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 투자자는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투자주식의 매각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서 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

2.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문제점 분석

<그림 1>을 이용해서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가. 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유형①의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내국법인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x_1)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x_2)의 현행 조세지원 대상이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내국법인의 모펀드에 대한 출자(y_1) → 모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y_2)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y_3) 및 내국법인의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z_1) → 상생협력기금의 모펀드에 대한 투자(z_2) → 모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z_3)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z_4)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금액이 $0.05x_2$ (이하 “a”)에서 $0.05x_2 + (0.05\text{MAX}(0.6y_1, y_3) + 0.03\text{MAX}((y_3 - y_{-t}), 0) + 0.1z_1)$ (이하 “b”), 여기서 “ y_{-t} ”는 직전 3년 간의 y_3 의 평균)으로 외견상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지원 경로 및 세액공제 금액의 외견상 확대(a → b)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출자·출연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모펀드 및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자(y_1)·출연(z_1)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자펀드에 대한 출자(x_1)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이를 통한 내국법인의 투자 증가($x_2 \rightarrow (x_2 + y_3 + z_4)$)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그 결과 내국법인이 얻는 조세혜택 확대(a → b)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상생협력 목적의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이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¹⁰⁾를 통해 출연금의 10%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세제지원방안을 통한 추가적인 정책효과는 상생협력 목적을 제외한 모펀드에 대한 투자 목적의 상생협력기금 출연(z_1)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세제지원방안을 통한 내국법인의 투자 증가 및 조세혜택 확대의 규모가 더욱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다¹¹⁾.

물론 <그림 1>과 같이 출자·출연 및 투자 단계의 분리로 인해 자펀드를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x_2 \cdot y_3 \cdot z_4$)에 비해 내국법인의 출자·출연($x_1 \cdot y_1 \cdot z_1$)의 규모가 더욱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구축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세혜택이 발생하고(b의 $0.05(0.6y_1$

10) 조특법 제8조의3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③ 내국인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3% 및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11) 이와 함께 산출세액의 제약 및 최저한세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혜택 확대의 제한 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y_3)$), 이러한 조세지원의 제공이 다시 추가적인 출자·출연 및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해당 투자의 규모가 큰 경우에도(즉, 자펀드를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의 추세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역시 추가적인 조세혜택이 발생하고(⑥의 $0.03(y_3 - y_{-t})$), 이러한 조세지원의 제공이 다시 추가적인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출자·출연 규모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최종적인 투자대상의 경제성 여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펀드의 투자 단계와 분리해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와 같은 상대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후의 연도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발생해서 장기간에 걸친 순증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수익성의 예상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큰 경우에도 역시 이후의 연도에는 반대의 결과가 발생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출자·출연 및 투자 규모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내국법인의 조세혜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출자·출연 단계의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나. 개인의 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유형②의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x_1)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x_2)의 현행 조세지원 대상이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개인의 모펀드에 대한 출자(y_1) → 모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y_2)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y_3)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펀드를 포함한 복수의 경로를 통한 개인의 벤처기업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금액이 $0.1x_1$ (이하 “㉠”)에서 $0.1(x_1 + y_1)$ (이하 “㉡”)으로 외견상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지원 경로 및 소득공제 금액의 외견상 확대(㉠ → ㉡)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출자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모펀드에 대한 출자(y_1)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자펀드에 대한 출자(x_1)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이를 통한 개인의 투자 증가($x_2 \rightarrow (x_2 + y_3)$)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그 결과 개인이 얻는 조세혜택 확대($㉠ \cdot t \rightarrow ㉡ \cdot t$, 여기서 “ t ”는 개인의 한계세율)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것이다¹²⁾.

즉, 벤처기업의 투자를 위한 모펀드에 대한 출자가 새롭게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의 감소로 인해 전체 출자 규모를 증가시켜서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출자 단계의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12)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의 제약 및 최저한세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혜택 확대의 제한 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다. 모펀드·자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유형③의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x_1)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x_2) 및 적격펀드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z_1) → 사모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z_2)의 현행 조세지원 대상이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개인·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의 모펀드에 대한 출자(y_1) → 모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y_2)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y_3) 및 적격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투자(w_1) →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w_2)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펀드를 포함한 복수의 경로를 통한 개인·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 및 적격펀드(이하 “개인 등”)의 벤처기업의 투자를 통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혜택의 금액이 $g_1 \cdot t$ (이하 “㉔”)에서 $(g_1 + g_2) \cdot t$ (이하 “㉕”)으로 외견상 확대된 것이다(여기서 “ g ”은 현행 조세지원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 g_2 ”는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추가적 주식양도차익, “ t ”는 개인·법인의 한계세율).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지원 경로 및 조세혜택의 외견상 확대(㉔ → ㉕)에도 불구하고 유형②와 유사하게 개인 등의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출자·투자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모펀드에 대한 출자(y_1)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자펀드에 대한 출자(x_1)가 감소하거나 자펀드에 대한 투자(w_1)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w_2)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이를 통한 개인 등의 투자 증가($(x_2 + z_2) \rightarrow (x_2 + z_2 + y_3 + w_2)$)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그 결과 개인 등이 얻는 조세혜택 확대(㉔ → ㉕)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것이다¹³⁾.

즉, 벤처기업의 투자를 위한 모펀드에 대한 출자 및 자펀드에 대한 투자가 새롭게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인해 전체 출자·투자 규모를 증가시켜서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출자·투자 단계의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라. 자산 관리·운용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유형④의 세제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x)를 위한 자펀드에 대한 창업기획자의 용역 제공(z_1)의 현행 조세지원 대상이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모펀드에 대한 자펀드의 출자(y_1)를 통한 자펀드에 대한 벤처기업에 투자(y_2)를 위한 모펀드에 대한 창업기획자의 용역 제공(z_2)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펀드를 경유하는 경로를 포함한 자펀드의 벤처기업의 투자를 위한 창업기획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조세혜택의 금액이 $0.1z_1(1-\nu)$ (이하 “㉖”)에서 $0.1(z_1 + z_2)(1-\nu)$ (이하

13) 이와 함께 양도소득금액 및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제약으로 인해 조세혜택 확대의 제한 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h”)으로 외견상 확대된 것이다(여기서 “v”는 창업기획자의 부가가치율).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지원 경로 및 조세혜택의 외견상 확대(g → h)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에 의한 모펀드를 경유한 출자까지 포함한 자펀드의 벤처기업 투자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창업기획자의 모펀드에 대한 용역 제공(z₂)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자펀드에 대한 용역 제공(z₁)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이를 통한 투자 증가($x \rightarrow (x+y_2)$)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그 결과 창업기획자가 얻는 조세혜택 확대(g → h)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것이다¹⁴⁾.

즉, 벤처기업의 투자를 위한 모펀드를 경유한 출자가 새롭게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의 감소로 인해 전체 출자 규모를 증가시켜서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함께 유형① 내지 유형③과 같이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출자·투자 단계의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벤처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조세지원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벤처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조세지원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구 분	기대효과	문제점
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경로 및 금액 확대	구축효과로 인한 내국법인의 제한적인 투자 증가 규모
개인의 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경로 및 금액 확대	구축효과로 인한 개인의 제한적인 투자 증가 규모
모펀드·자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의 범위 및 규모 확대	기존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감소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의 경로 및 범위 확대	자펀드에 대한 용역 제공의 감소로 인한 제한적인 투자 증가 규모

III.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1.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

앞선 장의 분석과 같이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전반적으로 조세지원 경로 및 조세혜택

14) 이와 함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의 인상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조세혜택 확대의 제한 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액의 외견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출자·출연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출자·출연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현행 조세지원의 대상인 출자·출연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투자 증가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이를 통한 조세혜택 확대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즉,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조세유인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출자·출연 단계의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유형①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에서 벤처기업 투자금액(x_2)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해서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세제지원방안에서는 조세혜택의 증가분이 추가적 투자금액($y_3 \cdot z_4$)이 아니라 신규 출자·출연액($y_1 \cdot z_1$)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 조세정책의 수단과 최종적인 정책목표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즉, 모펀드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y_3)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행 조세지원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z_1)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생협력기금의 모펀드에 대한 투자(z_2), 모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z_3) 및 자펀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z_4)의 단계를 통해 당초 출연액의 50%가 최종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암묵적 가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역시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지원과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금액($x_2 \cdot y_3 \cdot z_4$)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양자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유형①과 도입목적 및 수혜자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4)와 동일하게 10%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단, 해당 세액공제의 “기술가치 금액”과 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⁵⁾.

다음으로, 유형②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 및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모두 조세혜택이 투자액($x_2 \cdot y_3$)이 아닌 출자액($x_1 \cdot y_1$)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 유형①과 마찬가지로 조세정책의 수단과 최종적인 정책목표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

15) 조특법 제12조의4에서 규정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내국법인의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조특법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기술가치 금액”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다(동조 제4항).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내국법인인 유형①과 동일하게 개인의 경우에도 최종 투자 금액($x_2 \cdot y_3$)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양자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10%의 현행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단,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형③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 및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모두 조세혜택이 투자이익($x_2 \cdot y_3 \cdot z_2 \cdot w_2$)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 유형①·②와 같은 불일치의 문제점은 없지만, 비과세의 조세지원 방식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손금과 같은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격펀드와 개인 등의 투자손실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으로 계산해서 모험적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④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 및 벤처세제지원방안에서 모두 창업기획자가 공급하는 용역($z_1 \cdot z_2$)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으로 발생한 누적효과로¹⁶⁾ 인해 자펀드의 벤처기업 투자($x \cdot y_2$)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펀드 및 모펀드가 공급받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벤처 투자의 최종적인 세후수익율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먼저, 내국법인의 세액공제 및 개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과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조세정책의 수단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공제율을 인상하되,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각호)>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 16) 우리나라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에게 채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효과(cascade effect)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누적효과는 다음의 산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text{면세 누적효과} = \text{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 \times \text{세율}$$

우에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손실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으로 계산해서 모험적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누적효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조세지원의 개선방안

앞선 절에서 분석한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과 무관하게 현행 조세지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유형① 내지 유형③을 통한 현행 조세지원은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거나(유형③) 주식 취득가액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하는 것이다(유형① 및 유형②).

먼저,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 방식 중에서 양도차익·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 수혜자들이 대부분 일반 법인들과 다르게 소득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등의 일반적인 조세혜택의 실효성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서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지원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특수목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 및 주주 단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방식으로 법인 단계의 세금 부담을 사실상 제거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면 소득공제보다 큰 일부 과세소득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의 부담을 대부분 제거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가 보다 완전하게 일체의 과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완결적인 조세혜택과 함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도액 내에서 개인의 출자액 및 법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액을 규정한 것은 해당 출자액 및 투자액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에 대한 5%의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고수익·고위험 투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위험회피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 환경에서 최소한의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10%의 소득공제는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충분한 과세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투자자에게 더욱 큰 절세효과가 발생해서 투자자를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한계세율이 높은 개인

에 대한 10%의 소득공제율을 통한 (10%×한계세율)의 절세효과는 법인에 대한 5%의 세액공제율에 근접하기 때문에 역시 최소한의 기본 수익률의 보장으로 위험부담의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유형① 내지 유형③을 통한 현행 조세지원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시장 실패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업종 및 경제적 가치가 유사한 투자대상들 중에서도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 자금 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출자·투자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개별 투자자의 출자·투자액에 대하여 유형① 내지 유형③을 통한 현행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정상적 투자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와 함께 투자대상인 벤처기업까지 포함해서 조세혜택의 한도를 제한하는 전술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형① 내지 유형③을 통한 현행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출자·투자의 한도액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분산시켜서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행 조세지원에서 유형③의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이 유형②의 소득공제와 상이한 것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실무상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가급적 양자를 일원화해서 시장의 혼돈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형③의 양도차익 비과세와 유형②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은 <표 4>와 같이 구분되는 것이다.

〈표 4〉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투자대상

구분	투자대상
유형③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코넥스상장기업
유형②	벤처기업등(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¹⁷⁾)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17)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단,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를 1,5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및 기업신용조사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 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조특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

즉, 이러한 투자대상의 차이는 유형③의 현행 조세지원에서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가 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 출자 시점에는 투자대상에 대한 정확한 투자비율을 알 수 없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벤처기업 생태계에 투입되는 산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자를 일원화하면서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사후적 조정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현행 조세지원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먼저, 개별 투자자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하여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비정상적 투자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이 소득공제와 상이한 것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장의 혼돈을 제거하기 위해 양자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정부는 2022.11.4.에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벤처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세부적 내용을 분석하면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벤처 세제지원방안은 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세액공제(유형①), 개인의 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유형②), 모펀드·자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유형③) 및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유형④)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전반적으로 조세지원 경로 및 조세혜택 금액의 외견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출자·출연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세제지원방안에 의한 신규 출자·출연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현행 조세지원의 대상인 출자·출연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해서 투자 증가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이를 통한 조세혜택 확대의 규모도 작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조세유인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출자·출연 단계의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유형①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에서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해서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세제지원방안에서는 조세혜택의 증가분이 추가적 투자금액이 아니라 신규 출자·출연액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 조세정책의 수단과 최종적인 정책목표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지

원과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양자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유형①과 도입목적 및 수혜자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4)와 동일하게 10%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단, 해당 세액공제의 “기술가치 금액”과 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형②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 및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모두 조세혜택이 투자액이 아닌 출자액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 유형①과 마찬가지로 조세정책의 수단과 최종적인 정책목표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내국법인인 유형①과 동일하게 개인의 경우에도 최종 투자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해서 양자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면서 해당 투자금액에 대한 10%의 현행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단, 벤처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의 대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형③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 및 벤처 세제지원방안에서 모두 조세혜택이 투자이익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 유형①·②와 같은 불일치의 문제점은 없지만, 비과세의 조세지원 방식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손금과 같은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격펀드와 개인 등의 투자손실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으로 계산해서 모험적인 벤처투자의 활성화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④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지원 및 벤처세제지원방안에서 모두 창업기획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으로 발생한 누적효과로 인해 자펀드의 벤처기업 투자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펀드 및 모펀드가 공급받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벤처 투자의 최종적인 세후수익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벤처 세제지원방안의 개선방안과 무관하게 현행 조세지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개선방안으로 먼저,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개별 투자자의 출자·투자액에 대하여 유형① 내지 유형③을 통한 현행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비정상적 투자 집중의 문제점을 완화해야 하고, 유형③의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이 유형②의 소득공제와 상이한 것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양자를 일원화해서 시장의 혼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미시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역동적 벤처투자의 생태계의 조성과 관련한 장래의 정책적 논의에서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대권 · 전병욱. 2016. “특별법상 투자조합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8권 제2호 : 253-274.
- 국세청. 각연도. 개정세법해설.
- 금융위원회. 2019.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
- 김재진 · 기은선. 2016.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재진 · 기은선. 2020.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재진 · 홍범교. 2014.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진수 · 김재진. 2012.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학수 · 문운상 · 우석진 · 김도형. 2020.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 각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박성욱 · 김영훈. 2016.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 개인투자 조합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 533-563.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 국가법령정보. www.law.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

How to Improve the Government's Proposal to Revise Tax Laws for Venture Investment

Byung Wook Jun *

〈Abstract〉

The government's proposal to revise tax laws for venture industries ("Government tax proposal" hereafter), issued on November 4, 2022, is not regarded as highly effective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enough as the crowding out effect against current investment for venture industries is likely to be anticipa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for the policy goal is suggest as below.

First, regarding both tax credit for corporations and deduction for sole proprietors, tax benefit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investment amounts to venture companies for policy synchronization, and those amounts should be defined more accurately for the policy goal while the tax credit and deduction rates may as well be raised.

Second, regarding nontaxable capital gains in venture investment, possible capital los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net operating loss when calculating taxable incomes of both corporations and sole proprietors in order to make use of the tax saving effect occurred in case of unprofitable transactions.

Finally, regarding the VAT exemption for assistant entities,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hould be adopted to remove the cascade effect and, as a result, keep up the after-tax rate of return of venture investment.

〈Key words〉 Government tax proposal,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Crowding out effect, Tax saving effect, Net operating loss, Cascade effect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bwjun@uos.ac.kr